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1. 9.(금)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을미년 첫 회의입니다. 평화와 정직, 정의, 순박 등을 상징하는 청양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을 실현하는데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편치 않은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기자 분들을 비롯한 방청인들께서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59차, 제6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61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61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5-01-00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재허가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결과 확인을 위하여 최소 허가유효 기간인 3년으로 단축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주)씨제이헬로비전과의 법인 합병 계획’을 ‘15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것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제고 및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널 편성, 이용요금, 위약금 등과 관련된 가입자 불만 감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계획을 ‘15년 상반기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에 동의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자와 경과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방송·법률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의 검토 의견입니다. 외부 자문단은 방송법 제 10조와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심사사항을 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예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검토 결과입니다. 자문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1,000점 만점 중 650점에는 미달하였습니다만 해당 법인이 '13년 10월 (주)씨제이헬로비전에 경영권이 인수된 이후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심사항목에서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허가에 동의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방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방송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할 것, 두 번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세 번째 방송발전 및 지역채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디지털 전환 투자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널편성, 이용요금, 위약금 등과 관련된 가입자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부의 심사 결과입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은 금년 1월 20일~'18년 6월 30일까지 3년 5개월로 재허가를 하되, 아래 내용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에 대한 재허가 조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무국의 검토의견입니다. 미래부가 재허가 조건(안)으로 제시한 SO-PP 협의체 합의내용을 반영한 '14년~'15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재무구조 개선 이행 장치 마련 등 관련된 조건부과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외부자문단의 검토결과,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취약 및 감점 등으로 자체적인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점수에는 미달하였습니다만 '13년 10월부터 새로운 주주에 의한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실제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단축, 재무구조 개선계획 및 지역채널 운용계획 등의 성실한 이행조건으로 재허가에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조건부 재허가 동의 내용은 이미 보고 드린 의결주문(안)과 같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에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경과사항을 보면 영서방송이 재허가 신청을 한 것이 작년 7월 23일입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리고 우리에게 사전동의 요청한 것은 12월 17일입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1월 19일까지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연말·연시 끼어서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에 방통위에 이렇게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사전동의를 위한 심의,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년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 업무가 분리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린 내용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90일 전에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소 30일 이내에 우리가 사전동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그 당시 양 부서 간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기준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통위에 지난 12월 17일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사전동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거쳐 사전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거의 형식적 절차나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전동의를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이번의 경우 촉박한 점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또 하나는 미래부가 먼저 재허가 심의를 완료한 뒤에 우리가 재허가 사전동의를 심의하는 것입니까? 동시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료방송이니까 주관부서는 미래부인지 알겠는데 재허가 심사를 미래부에서 하면..., 사전동의를 법적 절차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사전동의 해당 부서에도 동시에 자료를 주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선후관계여야 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상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의를 한다든가 또 불러서 논의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중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미래부가 1차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점수가 1,000점 만점 기준에 650점에도 상당히 하회하는 것이지요? 떨어지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점수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허가하겠다고 우리에게 사전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영서방송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보니까 절차가 이번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전동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는, 시간 여유를 충분히, 한 달 이상 갈 수 있게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주관부서에서 심사에 들어감과 동시에 사전동의 부서에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몇 점 얻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624.86점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624.86점이면 많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작년에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해 봤지만 그 정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방통위가 보류하면, 사전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방송송출 중단 사태까지도 예상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점수가 모자라니까 재허가 조건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 소관업무만 보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채널편성, 이용요금, 위약금, 가입과 해지의 문제..., 이것이 가입자 불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허가 조건에 왜 안 들어가 있지요? 우리 사전동의 조건에 넣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동의조건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여유만 있다면 방통위의 직무상, 최소한 이런 이용요금, 위약금, 가입과 해지 관련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계획서를 받아본 뒤에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방송평가와 시청자 권익보호는 법정기구로서 방통위 산하에 있습니다. 물론 미래부도 자신이 관할하는 유료방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전동의를 할 때 여기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것을 받아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까딱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 책임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에도 설명해주어야 하고 가능하면 저는 보류시켜서 검토한 뒤에 사전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서방송이 점수가 이렇게 나쁜 이유는 아무래도 재무구조 부분이 아주 안 좋아서 감점도 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영서방송이 (주)씨제이헬로비전과 합병을 하겠다는 계획을 미래부에 제출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합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합병이 제대로 되는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동의조건으로 추가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자 불만 문제는, 당연히 방통위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도 있고 또 방송시장에 있어서의 시청자 권익 침해 문제는 시장조사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도 제출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사전동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을 미래부에도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정리를 한 번 하고 다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하는 것으로 미래부와 협의하셨다고 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5월 그 당시, 최소 30일 이내에 미래부가 우리에게 통지해 주도록, 어느 정도 의견

을 모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미래부와 동시에 심사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사전동의 하는 것을 보면 일단 미래부가 나름대로 심사를 다 완료해서 허가조건까지 우선 정해 놓은 다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심사는 미래부가 먼저 앞서서 하되, 반드시 우리가 미래부의 심사 결과를 보고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사기간은 차등을 두되 미래부의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사전동의를 요청하여 저희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고, 또 미래부 의견에 저희가 구매받음이 없이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래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30일 전' 그 기간을 좀 더 당겨서 미리 저희에게 사전동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사전동의 제도가 원활하게 또 의미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해당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전동의제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말씀 드리면 세 번째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동의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에 왜 사전동의제가 도입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SO 업무 소관을 놓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여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 업무 일체를 미래부로 이관하자고 했고, 반면에 야당은 방송의 공적책무 구현을 위해서 유료방송의 핵심 플랫폼인 SO 관련 업무를 방통위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타협안으로 SO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통위에 사전동의 권한을 둬으로써 재허가 심사 등에서 사업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것이 사전동의제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동의제를 운영할 때는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 당시의 입법취지 그리고 저희의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동의제를 운영한 뒤로 처리한 안건이 약 100여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 서면의결을 통해서도 결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9조에 사전동의제가 규정이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5조제5항에 이와 관련된, 즉 방송사업자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사전동의제와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 종편 승인 업무를 가지고 있고, 미래부에는 유선방송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는 그 각각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일부 내용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전동의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생각은, 방송법에 사전동의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사전동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이유는 금년 상반기, 지금 저희가 대략 26건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 정도 재허가 심사하면서 사전동의제를 한다면 30일 전에 심사를 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안 되는데, 당장 금년 상반기에 26건 정도를 재허가해 준다면 최소 30일 전에 사전동의 요청을 받고 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상당히 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심사 자체가 부실하게 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정비는 조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크게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적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전동의에 대한 별도의 규칙 또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재허가 건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규칙으로 반영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그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2월 중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허가 사전동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행여부를 점검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미이행 시, 사업자가 저희가 부여한 재허가 사전동의 조건

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들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처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자들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사항에 대해 미래부에 주면 미래부에서 이 조건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의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받는 것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직접은 아니더라도 미래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것이 부실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의견을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시장조사권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의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입자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의 권익증진, 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은 저희 방통위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사전동의 심사 시에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서면으로 그쪽 사업자들이 계획이나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보고할 때 실제로 이용자들, 시청자들의 불만이 감소했다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측정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재허가 조건이라고 본다면 단순히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서비스 개선이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운영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 보고보다는 그러한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불만이 감소했다거나 만족도가 증가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부에서 저희에게 넘긴 미래부 심사결과 4페이지를 보시면 박스 안의 세 번째 동그라미

입니다.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미래부에서 제시한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해서 올해 정한다 하더라도 '16년, '17년까지 허가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에서 정한 권한 내, 즉 미래부의 권한 내에 있는 행정행위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동의해 줬던 내용과 별개로 미래부가 독자적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그리고 재허가 조건에 대해 해석과 적용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 부분은 위로 붙여서 구체화하든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별도의 조건으로 부과하더라도 그러한 임의로 해석하거나 적용이 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미래부에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요?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별개의 항이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그것은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서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셔서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동의하는 의견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단지 사전동의 절차, 방법, 일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방송법을 보니까 방송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7조제1항에 보면 재허가할 때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방송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은 재허가 시 사전동의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제가 보기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동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일정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 국장님께서 2013년 5월에 미래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 했으나 제가 보기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미래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이전에 다른 입법례에서 사전동의 절차나 그때 심사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 번 들여다보고, 제가 보기에 시간에 쫓겨서, 그 뒷부분까지 다 보고 했다고보다는 법 제9조제2항 단서조항만 일단 그 당시에 넣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입법적인 미비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입법적인 미비를 보완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전동의 절차를 집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법례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연후에 그다음에 미래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송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은 사전동의뿐만 아니라 허가, 재허가, 승인, 재승인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이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4월부터 많은 사전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명칭이 기본계획이 됐든 내부적인 지침이 됐든 사전동의 방안을 정비해서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미래부와 협의해서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건으로 붙인 것은 사전동의 조건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전동의 조건은 반드시 허가조건에 다 집어넣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아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시청자 보호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계획을 받아보고 저희가 동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이런 개선계획을 2015년 상반기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개선계획이 미래부에 제출되었지만 제출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 방송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나가서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번지르르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방송시장조사과에 임무를 부여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시청자 권익보호 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일단 미래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는 그 계획서를 보고 시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분명히 그 시청자 권익보호 계획서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사무처의 담당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1월 19일이 허가기간 만료일인데 오늘 달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곤란하지요. 우리가 재량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만 하라는 뜻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사전동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우리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보고된 조건 하에 사전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10월에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불법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술적 조치를 하는 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의무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기록의 보관기간은 2년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개정안 제 30조의3의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하고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관련입니다. 가입자의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전기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 처리 실적, 그리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또는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관련입니다. 개정된 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단수단의 종류, 내용 등에 대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를 하고 차단수단 설치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 중 재정에 관한 사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과태료 관련 부분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 방해시 과태료 부과 상한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금년 4월 16일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음란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관련 규정들은 나중에 시행을 어느 과, 어느 팀에서 하게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개인정보보호윤리과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인터넷윤리팀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과 안에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최근에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교육부, 여가부 이런 데서 학교폭력, 성매매 특별대책 등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항상 온라인에서의 대책, 사이버상의 대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저희 방통위가 최근에 정보통신망법이다, 오늘 보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그런 정부정책의 중요한 제도적인 근거로서 최근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윤리, 문화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재정비된, 보강된, 보완된 이러한 제도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방통위 차원의 인터넷, 온라인 내지는 사이버상의 이런 음란물 대책이든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교육, 윤리, 문화 확산 문제이든 이런 것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종합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소모적으로 많은 인력, 시간을 투입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들을 종합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부처가 주관하고 종합하는데 한 파트로 들어가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종합하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서 성안을 하고 다른 관계부처에서 그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크게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두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시행령의 개정 내용으로 넣고자 하는 것들도 최근 그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인데, 음란물 말고 다른 유해물에 대해서 함께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SNS 인터넷 문화 전반에 대해 많은 비판,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비하 발언,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 '유족충' 같은 표현, 이런 것은 정말 국가적인 재난 피해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었고, '시체 장사 한두 번 당해 봤냐?' 이런 이야기들도 SNS에서 유통됐습니다. 음란물 못지 않게 정말 반공동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이번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해 정보에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고, 우리 위원회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같이 그 부분을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망법에도 명예훼손이나 중상, 비방은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음란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내용들을 여기에 함께 기술적으로 예방,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란물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유해내용이 많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이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상에서는 모법에 근거를 둔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거나 하고 있는 것도 정리가 될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도 도출이 될 것이니까 그 작업을 빨리 하면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정보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 부분이 바로 음란물에 해당됩니다.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불법유해 정보는 또 다른 호에 있습니다.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거기에 보시면 음란한 부호, 영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아마 시행령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술적 조치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그런 글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심의해서 삭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모범에는 음란물에 대한 제한규정만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이번에 신설된 제22조의3은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다른 유해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되어 있는 것 같고….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정보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별도로….

○ 김재홍 상임위원

- 음란물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행령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망법상 다른 유해물에 대해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정말 보기 드문 세월호 참사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중에 망법 논의할 때 해야 할 것 같은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모범에도 그것이 반영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에 지우거나 사후에 제재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조치로 기술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아예 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가 필요해서, 기술적 조치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터넷윤리팀에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독자적인 것을 세워 주시기 바

합니다. 이런 것은 ‘사이버상의 청소년 보호’라고 볼 수도 있고 제목은 적절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것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지를 판단하는 데에 또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먼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중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성 보장’, ‘개인정보유출 대응지침 마련 의무화’ 등을 위한 과제 이행과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 기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표>에 있습니다만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 규정하고, 그다음에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마련을 의무화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관련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을 현행 구체적인 기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규모·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자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자의 내부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필요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시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자 환경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영문 대문자·영문 소문자·숫자·특수문자”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영문·숫자·특수문자”로 간략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내부관리계획에 있어서 위탁자의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재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에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외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에만 접근통제 조치를 하고 있으나 태블릿PC 등으로 업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추가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하여 유지도록 “최대 접속시간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는 장치를 “컴퓨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모

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출입통제와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3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일부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번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취지나 배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이 기준은 사업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맥시멈(maximum) 기준,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최대한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해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이번에 이 기준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미니멈(minimum)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방통위에서는 온라인 분야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대해서 미니멈을 제시를 하고 사업자들은 그것을 최소한 지켜야 하고 그 이상의 대비·대책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하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부도 최근에 고시를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우리는 온라인 분야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화도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범정부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개혁,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도 원포인트 개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시이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으로 금년에 시장변화, 기술변화에 따라서 몇 차례 고시 개정도 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해킹사고가 일어났지만 해킹사고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안 났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킹사고가 얼마든지 개인정보유출 관련 해킹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이 기준을 원포인트 개정을 해서라도 시장동향에 잘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달, 1~2년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개정하기에는 이 분야가 아주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 내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호조치의 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했다,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율 재량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이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저희 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나 인식,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인식들이나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개최된 CES2015 행사에서도 사물인터넷(IoT)이 주요한 관심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나 우리의 일상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로 저장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늘어나는 IoT나 커넥티드 디바이스(connective device)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보안 및 해킹이 증가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래부와 KISA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 주요 동향 및 2015년 전망분석」 보고서를 보면 가전제품과 전자기기 등 생활 속 모든 사물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 환경이 확산될수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인식, 그리고 이용자들의 인식도 중요하고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린 이유는 아침에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 해킹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는데 보니까 웹셸(web shell)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해킹수단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방화벽만 제대로 구축하고 있어도 이렇게 해킹당할 우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나 보안 관리자들의 인식이 매우 안일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소홀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배달통 등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러한 상태일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보안 실태들도 더 정확히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와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제도만 고칠 것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으로 인식 및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타이틀과 그 내용을 보면 기업들에게 말하자면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또 주요내용 중에도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을 현행 구체적 기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걱정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또는 이런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오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인식을 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라는 정책목표는 분명하고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다만 그 수단, 방법의 선택을 맡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KT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심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대로 했는데 이런 것이 생겼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변호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디지털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이드라인대로만 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은 알아서 해라..., 시장, 업계가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응하고 따라가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가 이 대책의 의미라는 것을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인 규제 직무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들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으로 갔을 때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과거에 구체적인 기준이었을 때 면책되는 것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현재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도 그 누출을 막을 수 없었다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업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러한 조치를 안 해서 유출이 났을 때 그 책임에 관해서도 작년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 그로 인한 손해 증명을 종전에는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다 덜어줬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 1,000명이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법정손해배상에 의해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의 손해배상을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과거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상대방 손해가 증명이 안 되어서 빠져나갈 길이 생겼지만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서 자기네들 기업의 존폐까지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우리들의 조치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플러스 홍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한정된 인력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위험지역부터 조사해 나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이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허술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설사 누출이 안 일 어났더라도 저희가 조사인력이 부족해서 다 조사를 못 하면 통지라도 해서 경고를 해서 이 런 것들을 빨리 갖추라고 하는 역할을 저희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참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 보시면 ‘14년 10월 27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선 방안 마련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 이기주 위원을 위원장으 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29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 가위원회에서 ‘14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을 심의하였고, 12월 30일 미래부와 평 가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방송사업자 중 방 송평가를 받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PP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및 데이 터 방송콘텐츠 사업은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와 경쟁력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고, 그리고 허가·승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등록PP는 회계분리의 어려움으로 평 가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평가제도 취지를 고 려해서 종교PP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평가절차는 이번부터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평가방안을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방안을 확정합니 다. 그 이후에 평가지원단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하고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공표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방법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 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평가 항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에는 중소PP의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계열PP와 개별PP로 그룹을 분리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계열PP에 비해 프로그램 제작환경이 열악한 중소·개별PP의 프로그램제작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신기술 콘텐츠 제작” 평가항목의 경우, 해당 PP가 등록할 때 제시하는 공급 분야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정함으로써 해당분야 전문채널로서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 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콘텐츠 내 용심의 규정 준수여부” 및 “콘텐츠 수상실적” 평가항목의 점수를 기존보다 2배 상향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 공개는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총점 및 3대 경쟁력 요인별 우수등급 이상만 공개하고자 합니다. 활용방안으로는 이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하고, 그리고 방송대상 특별상인 “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역량 우수상”의 선정기준은 추후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평가절차 접수 및 분석을 '15년 1월~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2월 말까지 평가결과 및 우수상 선정기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및 공개는 '15년 올해 3월 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께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콘텐츠 제작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제일 처음 이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시작하게 된 부분은 제작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3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PP 경쟁력을 평가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PP 콘텐츠의 제작 경쟁력을 높이는, 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주요사항으로 고려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3페이지 평가항목 및 방법을 보면 두 번째에 있는 중소PP의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그리고 계열PP에 비해 프로그램 제작환경이 열악한 중소·개별PP의 프로그램제작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MPP, 아니면 지상파 계열의 MPP에 물론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아무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소PP들을 선정해서 지원·육성하겠다는, 이것이 첫 번째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나라 콘텐츠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고, 1~2년 하면서 이것이 계열PP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방법론을 개선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바꾸는 부분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제작지원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미래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저희 평가방식을 좀 더 중소PP에게 지원이 유리하도록 방식을 개선했고, 또 미래부도 저희 개선안에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적지 않은 PP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평가작업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의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효하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활용방안을 보면 평가결과를 미래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상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SO에서 채널을 선택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의 반영비율들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부의 입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수고해서 이러한 평가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유관부서인 미래부에도 잘 전달이 돼서 그쪽 정책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다음 목요일이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으로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0분 폐회 】